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2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정준호·복기왕·박희승

이학영 • 이춘석 • 박용갑

임호선 · 이연희 · 김재원

염태영 · 윤호중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사기 등에 등기가 악용되는 사회 적 문제가 발생함.

우리 법제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있으나 사회상 규상 등기는 신뢰도가 높은 공적 문서로 인식되고 있어, 허위정보를 담은 서류에 근거한 가짜 등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 는 구조이므로 현행 제도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며, 허위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려는 취지임(안 제24조제3항, 제29조의2, 제111조제1호).

법률 제 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허위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2(등기신청의 진위확인) ① 등기관은 제2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해당 서면의 진위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 여부 확인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허위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
	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u><신 설></u>	제29조의2(등기신청의 진위확인)
	① 등기관은 제2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서
	면의 진위여부의 확인을 요청
	<u>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
	<u>라야 한다.</u>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신청
	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
	의 진위여부 확인의 기간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1.</u> ~ <u>3.</u> (생 략)

-----.

-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

 위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

 를 적은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한 사람
- 2.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